

보 도 자 료

유류분제도 사건

[2020헌바295 · 2021헌바72(병합)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

[공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17일 대심판정에서 2020헌바295 · 2021헌바72(병합)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 및 수증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3. 5. 1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 2020헌바295

- 망 유○○(피상속인)은 자신의 생전에 아들의 배우자와 두 자녀(즉,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피상속인이 2017. 10. 6.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딸들은 2018. 2. 21.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며느리와 손자들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1. 기각되자,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1헌바72

- 망 김□□(피상속인)은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을 장학재단에 유증하고 2019. 5. 3. 사망하였다. 이에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20. 4. 29. 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장학재단은 1심 소송계속 중 주위적으로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5. 기각되자, 2021.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민법상 유류분 조항들은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모두 민법상 유류분제도 전체의 위헌성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건이 병합 또는 병합예정이어서 법적 통일성 및 소송경제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지위 및 주장하는 위헌성의 관점 등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 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은 ① 유족의 생존권 보호, ② 상속재산형성의 기여에 대한 보상, ③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이자. 그런데 시대의 변화 및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과 남녀평등 실현 등에 따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상속권에 우선하는바, 유류분제도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잔여 재산만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상속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 유류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아서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과 같은 공익에 부합하는 증여까지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의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함으로써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유류분제도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반면에, 일률적인 유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현실에 맞도록 유류분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일응 인정되지만, 제도의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 후에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하여 유족들의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지는 않는 점, 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점, 유류분의 범위가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고 있는 점, 일률적인 유류분 보장은 기여분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 정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재산권이라는 제한되는 사익이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달성되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상이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가 유류분에 준용됨),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 주요 쟁점

- 시대의 발전 및 가족형태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에 비추어 민법상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것인지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나 유증의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함으로써 소급하여 증여나 유증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속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 양 당사자의 해의(害意)의사에 따른 증여에서의 수증자인 제3자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 시기의 제한 없이 해당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대상으로 하면서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와 공동상속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족 간의 연대라는 유류분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 유류분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하여,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증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 기여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1. 이△△, 안◆◆, 안▲▲(2020헌바295)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배인구, 정호영)
- 2. ★★ 장학재단과 김◆◆(2021헌바72)
 대리인 법무법인 린(담당변호사 강인철, 김형완, 전성한, 김창혁)
-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 **참고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청구인들 측)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이해관계인 측)

□ 참고인 의견 요지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청구인들 측)

- ‘가족의 연대’, ‘유족의 생존권보호 및 기여청산’,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 보장’이라는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간의 대화 등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개시 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연대를 달성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에 공증이나 법원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압에 의한 사전포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현행 유류분제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전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여도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판례도 ‘물권적 구성’을 택함으로써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양 당사자의 해의의사에 따른 증여에서의 수증자인 제3자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수증자 또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와 공동상속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근거가 없다.
-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

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이해관계인 측)

- 입법 당시의 취지가 약해지거나 퇴색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존재의의가 있다는 점, 개정의 필요성이 바로 그 조항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비교법적으로도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류분제도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만약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민법 제1114조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중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
- 민법 제1118조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공평이라는 입법목적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민법 제1114조는 수증자와 그 이해관계인을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해의(害意)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둔 것이다.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상속권의 반환을 주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므로, 그에 합당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유류분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유류분에 관한 외국의 입법태도가 곧바로 우리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서 오는 불합리한 결과는 기여분제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이며,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의 기여는 “부담부 증여” 등을 인정함으로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시키는 해석론 및 입법론에 의해 보호할 문제이다.